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7월 23일, 권영진의원 · 복기왕의원
등 2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4.)

상정 · 축조심사 · 수정의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권영진 · 복기왕)

최근 전세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및 불법행위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전세 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또한, 중개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법령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중개 시장을 규율하고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정확한 사전 관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 사기 가담 등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

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해 나가하고자 함(안 제41조 및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 삭제,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신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함)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제1항),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제2항),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제3항)함과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함)·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제4항)되어 있음.

안 제41조는 현행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임의설립 및 복수설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법정단체화하고(안 제41조제1항),

이에 따라 설립인가 제도를 폐지(현행법 제41조제3항 삭제)하는 대신,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신설하며(안 제41조제2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으로 주사무소(중앙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시·도에 두는 하위조직의 명칭을 ‘지부’에서 ‘시·도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이와 같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연계하여 안 제41조제5항 삭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025년 10월 기준 「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공인중개사협회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96.6%(110,447명 중 106,668명)가 가입되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3.4%(3,779명)는 특정 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안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현황과 종합하여 보면,

안 부칙 제2조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안 제41조제1항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행 제도 하에서 불법 중개행위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중개업의 자정작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대표성과 공신력이 확보된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회원의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있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공적 기능을 보다 제도화하고 자율적 규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취지의 입법조치로 이해됨.

1999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중개업협회를 임의설립 단체로 변경하고 중개업자의 협회 가입 여부를 자율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각 전문자격사의 사업자단체(이하 “전문자격사단체”라 함)에 대하여 실시된 일괄적인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분야라는 점에서 종전에는 대국민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행정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전문자격사로 하여금 단일 전문자격사단체를 두고 이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규제를 두었으나,

오히려 전문자격사단체 의무 설립·가입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 후생의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인식 하에, 1999년 이후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협회를 비롯하여 변리사회, 공인노무사회, 감정평가사협회, 행정사회, 건축사협회 등 36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전문자격사단체 의무 설립 및 의무 가입 제도의 폐지가 추진되었음.

한편, 임의 설립·가입으로 전환된 전문자격사단체 중 다수의 경우 단일 법정단체 설립 논의를 다시 거쳐,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행정사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전문자격사단체가 종전의 의무 설립·가입 제도로 재전환되었음.

이는 전문자격사별 다수 단체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가격 인하 유도 및 창의·혁신 제고 등을 도모할 필요성 못지않게, 단일 전문자격사단체를 통하여 각 전문자격사에 대한 자율적 관리·규제, 전문역량 계발, 공동의 이익 추구 및 공익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현재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려는 안 제41조의 입법화 여부는 시장 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단체 설립·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과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의 대표성 강화를 통해 중개업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촉진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영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명칭 변경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려는 개정안의 제도개편사항은 시급성이 낮은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함(윤종오위원).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수정하여 유지하고, 총회의의 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명칭 변경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안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중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을 “협회(그 중앙회, 시·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현행과 같음)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의 사무소를 포함
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
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
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4. 이 법 위반행위
의 확인, 공인중
개사의 자격취소·
정지 및 개업공
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
지 등 행정처분
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
는 공무원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선,

③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
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
0인 이상이 발기인
이 되어 정관을 작
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
토교통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둔다.

② -----
--하며, 정관을 제
정하거나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
-----따
라 주사무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
시·도회를-----

-----.

<삭 제>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
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
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u>한다.</u> ④ <u>국토교통부장관</u> <u>은 제3항의 의결이</u> <u>법령이나 정관에</u> <u>위반될 경우에는</u> <u>협회장의 의견을</u> <u>들어 정관 변경이</u> <u>나 재의결을 요청</u> <u>할 수 있다.</u>	<u>한다. 이 경우 다</u> <u>음 각 호의 사항은</u> <u>총회의 의결을 거</u> <u>쳐야 한다.</u> 1. <u>정관의 제정과</u> <u>변경</u> 2. <u>예산과 결산</u> 3. <u>그 밖에 정관에</u> <u>서 정하는 사항</u> ④ <u>국토교통부장관</u> <u>은 제3항의 의결이</u> <u>법령이나 정관에</u> <u>위반될 경우에는</u> <u>정관 변경이나 재</u> <u>의결을 요청할 수</u> <u>있다.</u>
제44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u>협회와 그 지부</u> <u>및 지회를 지도·감</u> <u>독하기 위하여 필</u> <u>요한 때에는 그 업</u> <u>무에 관한 사항을</u> <u>보고하게 하거나</u> <u>자료의 제출 그 밖</u> <u>에 필요한 명령을</u>	제44조(지도·감독 등) (현행과 같음)	제44조(지도·감독 등) ① ----- ---<u>협회(그 중앙</u> <u>회, 시·도회 및</u> <u>지회를 포함한다)</u> <u>를</u>----- ----- ----- ----- -----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인중개사협회”를 각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를 “개업공인중개사의”로, “개선 및”을 “개선,”으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시·도에 지부를,”을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시·도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을 “협회(그 중앙회, 시·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
중개사협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4. 이 법 위반행위의 확인, 공
인중개사의 자격취소·정지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
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
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
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
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

③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협회의 설립) ① 개업공인
중개사의-----
-----개
선,-----
-----한국공
인중개사협회-----

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
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
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설립한다.

② -----하며, 정관
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④ -----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
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시·
도회를,-----

-----.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

<신 설>

<신 설>

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

제44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u>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u>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u> 제44조(지도·감독 등) ① ----- -----<u>협회(그 중앙회, 시·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u>를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